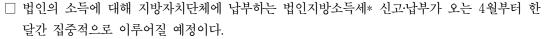
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·납부의 달

- 국세청, 2022. 4



* 지방세로 통상 국세인 법인세의 10% 수준

□ 행정안전부(장관 전해철)는 법인 99.9만여개*(사업연도가 '21.12.31. 종료되는 법인, 전체법인의 95%)의 2021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을 오는 4월 1일 (금)부터 5월 2일(월)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.

* ('20년) 84.9만 개 → ('21년) 92.1만 개 → ('22년) 99.9만 개, 전년대비 7.8만개 ↑

□ 법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 온라인 신고·납부 시스템인 '위택스(www.wetax.go.kr)'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,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소재한 시·군·구청 방문 또는 우편신고할 수 있다.

○ 사업장이 둘 이상의 시·군·구에 있는 경우, 법인은 사업장별 안분율*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 소득세를 사업장이 위치한 지자체에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.

* 안분율 = (사업장 관할 지자체 내 종업원수 + 건축물 연면적) ÷ 2 법인의 총 종업원 수 법인의 총 건축물 연면적) + 2

□ 행안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코로나19로 인한 운영시간 제한이나 최근 발생한 동해안 산불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(4월 → 7월) 직권 연장하기로 했다.

구 분		세정지원 대상
	1그룹	유흥주점, 단란주점, 클럽(나이트), 감성주점, 헌팅포차, 콜라텍·무도장
운영시간 제한 업종*	2그룹	식당·카페, 노래연습장, 목욕장업, 실내체육시설
/개단 日ㅇ	3그룹·기타	평생직업교육학원, PC방, 오락실·멀티방, 카지노 파티룸, 마사지·안마소, 영화관·공연장
고용위기지역		(경남) 거제시, 통영시, 고성군, 창원 진해구, (울산) 동구, (전북) 군산시, (전남) 영암군, 목포시
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		고용위기지역 및 (전남) 해남군
동해안 산불 관련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		(경북) 울진군, (강원) 강릉시, 동해시, 삼척시

- 다만, 직권연장 대상 기업이더라도 납부기한에 한하여 연장하므로 신고 기한 내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.
- 아울러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있어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, 별도 신청을 통해 납부기한을 연장*할 수 있다.
 - * 지방세기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부터 제8조, 제8조의2
 - ※ 지원대상은 약 2.9만여개(' 21년 법인지방소득세 납부액 기준, 약 392억원) 예상
- □ 특히, 올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시에는 중소기업 소급공제 대상기간이 한시적으로 확대(직전 $1년 \rightarrow$ 직전 2년)된다.
 - 통상 중소기업의 경우 결손이 발생하면 지난해 낸 세금에서 환급해주고 있으나(결손금 소급 공제), 「지방세법」개정('21.12.29.)에 따라 지난해뿐만 아니라 그 전년도에 납부한 세금에서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.
 - 이는 지난해 납부한 세금이 없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환급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라고 행 안부는 설명했다.
- □ 행안부는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 동안 납세지원을 위해서 「정부민원안내 콜센터 (110)」외에도 신고기간 동안 10여명의 상담원을 갖춘 전담 콜센터*를 추가 운영할 계획이다.
 - 또한, 위택스에 별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페이지를 개설하여 위택스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 할 계획이다.
 - * 법인지방소득세 위택스 신고 전담 콜센터 02-2031-9672
- □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"코로나19 및 동해안 산불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납세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." 고 밝혔다.

2022 · 04 · 06 www.eAnSe.com 15

참고 - 지방소득세 (개인·법인) 개요

□ 개관

- 개인 및 법인의 소득에 대해 특·광역시, 시·군에서 과세하는 지방세로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로 구분
 - (개인) 종합·양도·퇴직소득에 과세, 세수규모는 9.5조원('20년)
 - (법인) 사업·청산소득 등에 과세, 세수규모는 7.4조원('20년)

□ 납세의무자 및 과세범위

○ 소득세 및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(개인 및 법인)

구 분	거주자(국내에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), 내국법인	비거주자, 외국법인
과세범위	과세범위 국내·외 원천소득	

□ 과세기간

- (개인)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(「소득세법」제5조)
- (법인) 법령·정관 상 1년 이내의 1 회계기간 (「법인세법」제6조)
 ※ 전체 법인의 약 95%가 12월 결산법인(사업연도: 1.1.~12.31.)에 해당

□ 과세표준 및 세율

과세표준		소득세·법인세 과세표준과 동일		
	개인지방소득세	1,200만원 이하	0.6%	
		1,200만원 ~ 4,600만원	1.5%	
		4,600만원 ~ 8,800만원	2.4%	
		8,800만원 ~ 1억5천만원	3.5%	
		1억5천만원 ~ 3억원	3.8%	
		3억원 ~ 5억원	4.0%	
세		5억원 ~ 10억원	4.2%	
율		10억원 초과	4.5%	
	법인지방소득세	2억원 이하	1.0%	
		2억원 ~ 200억원	2.0%	
		200억원 ~ 3천억원	2.2%	
		3천억원 초과	2.5%	
	특별징수	소득세·법인세액의 10%		
	탄력세율	지자체별로 세율의 50% 가감 적용 가능		

- □ 세액공제 및 감면
- (개인)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제167조의2에 따라「소득세법」,「조세특례제한법」에서 세액공 제·감면되는 금액의 10%를 공제·감면
- (법인) 세액공제·감면 규정 없음
- □ 납세지(해당 특·광역시, 시·군)
 - (개인) 원칙적으로 주소지이며, 특별징수 납세지는 종류별로 따로 규정

< 소득종류별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납세지 >

구 분	근로·퇴직소득	이자·배당소득	연금소득	건강보험공단 지급 사업소득
납세지	근무지	소득 지급지 (예외) 본점 지급 복권당첨금 : 복권 판매지	주소지	사업장 소재지

- (법인) 각 사업장 소재지(종업원 수, 건축물 연면적 1:1 기준 안분)
 -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에 안분하여 신고·납부해야 함

<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계산식 >

۲/	관할 지방자치단체 안 종업원수) ₊ /	관할 지방자치단체 안 건축물 연면적		<u>.</u>	2
ι(-	법인의 총 종업원수) + (-	법인의 총 건축물 연면적	— /J	-	2

- □ 신고납부 방법
- 관할 지자체에 신고·납부
 - ※ 개인지방소득세는 세무서(지자체 공무원 파견)에서도 신고·납부 가능

	근로소득	매월 특별징수(원천징수) 후 다음 해 2월에 연말정산 ※ 근로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이 없는 경우 별도 종합소득 신고 불필요
개 인	사업소득 등 종합소득	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·납부
	양도소득	양도소득 신고기간에 2개월을 더한 날까지 예정신고·납부 후 다음 해 7월 말까지 확정신고·납부
법인	각사업연도소 득 등	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(법인세는 3개월) 이내 신고· 납부
	청산소득	해산 시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·납부

2022 · 04 · 06 www.eAnSe.com 17